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2026. 1.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하나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6-9
- 나. 제안자: 이상원 의원 외 6인
- 다. 제안일자: 2026년 1월 16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6년 1월 20일(화)

2. 제안사유

- 마포구 관내 도시형소공인(의류봉제, 인쇄 등 노동집약적 도시제조업)은 영세한 사업 구조, 종사자 고령화, 기술 전승 단절, 임대료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산업 지속 가능성에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특히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체계만으로는 도시제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기술 유지·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나. 경영지원, 기술개발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안 제4조, 제10조)
- 다. 인력 양성 및 숙련기술 전수 지원(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안 제8조 및 제9조)
- 마. 공동사업 및 집적지구 지원 강화(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3)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의: 경제진흥과(경제총괄팀)와 합의되었음
- 라. 입법예고: 2026. 1. 9. ~ 1. 15.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가. 제정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

- 본 조례 제정안은 2026년 1월 16일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달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1) 도시형소공인 정책·산업 환경의 최근 추세

- 최근 도시형소공인 정책은 단순 경영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작업환경 개선, 공정 고도화, 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 및 숙련 기술 전수 등 제조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특히 1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는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위험, 기술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2)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현황 및 구조적 취약성

- 마포구 관내 도시형소공인은 의류봉제 산업을 중심으로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등 노동집약적 도시제조업이 다수를 차지¹⁾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영세한 사업 구조와 종사자 고령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1) 마포구 도시제조업과 비교

| 구분 | 사업체 수 | 제조업 대비 | 도시제조업 대비 | 종사자 수 | 제조업 대비 | 도시제조업 대비 |
|-----------------|---------|--------|----------|---------|--------|----------|
| 의류봉제(C14) | 426 | 26% | 59% | 1,399 | 29% | 65% |
| 인쇄(C18) | 153 | 9% | 21% | 426 | 9% | 20% |
| 기계금속(C24,25,29) | 82 | 5% | 11% | 223 | 5% | 10% |
| 주얼리(C33) | 48 | 3% | 7% | 73 | 1% | 3% |
| 수제화(C15) | 16 | 1% | 2% | 47 | 1% | 2% |
| 제조업 전체 | (1,642) | 44% | 100% | (4,869) | 45% | 100% |

- 이 가운데 봉제업체는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²⁾된 업종으로, 도시형소공인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함. 2023년 봉제업체 실태조사³⁾에 따르면, 관내 봉제업체의 83.9%가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며, 20인 미만 사업장이 9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종사자의 80% 이상이 50~60대로 구성되어 신규 인력 유입과 숙련기술 전승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봉제업체의 상당수가 임대 기반으로 운영되고, 작업장 규모 및 설비 여건 역시 소규모에 그쳐 작업환경 개선과 공정 고도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여건은 봉제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마포구 내 인쇄·기계금속 등 다른 도시형 제조업 전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경영 일반 중심의 지원체계에 머물러 있어, 공정·기술·작업환경·집적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도시형 제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상원 의원은 제27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포구 봉제산업이 고령화·영세화로 인해 산업 단절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① 봉제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② 숙련 기술 전수와 청년 인력 유입을 연계한 체계적 지원, ③ 이를 뒷받침할 자치구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음. 또한 마포구의회는 2025년 7월 29일 ‘서울 봉제클럽 협동조합 간담회’를 통해, 2023년 폐쇄된 서북권 패션지원센터 기능 상실 문제, 작업환경 개선, 불필요한 규제 완화, 봉제 문화 활성화 및 산업 고부가가치화 필요성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3) 관내 봉제업 종사자별 현황

| 구분 | 조직형태별(개) | | | 종사자규모별(명) | | | | | | 종사자수(성별) | |
|-----|----------|-----|-----|-----------|-----|-------|-------|-------|---------|----------|-----|
| | 계 | 개인 | 법인 | 1~4 | 5~9 | 10~19 | 20~49 | 50~99 | 100~299 | 남 | 여 |
| 사업체 | 426 | 358 | 67 | 372 | 41 | 6 | 5 | 0 | 2 | | |
| 종사자 | 1,399 | 760 | 629 | 677 | 257 | 73 | 133 | 0 | 259 | 643 | 756 |

3)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이에 본 조례안은 봉제업체 실태에서 확인된 구조적 취약성을 정책 검토의 출발점으로 삼되, 이를 특정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마포구 내 도시형소공인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로 확장하여, 영세성·고령화·작업환경 열악·기술 전승 단절 등 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지원계획 수립,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공동사업 및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조문 체계〉

| 조 항 | 조 제목 | 조 항 | 조 제목 |
|-----|------------------|------|--------------------------|
| 제1조 | 목적 | 제9조 | 지원센터의 업무위탁 |
| 제2조 | 정의 | 제10조 |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
|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 제11조 | 공동사업의 지원 |
| 제4조 | 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 제12조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
| 제5조 |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 제13조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 제6조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 제14조 |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
| 제7조 | 기술전수 지원 | 제15조 | 사회적 인식의 제고 |
| 제8조 |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부칙 | |

1)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력양성,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공동사업 추진, 집적지구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2) 경영지원, 기술개발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안 제4조, 제10조)

-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지도, 기술개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환경 실태조사, 위해요인 진단, 설비·장비 개선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인력 양성 및 숙련기술 전수 지원(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숙련기술 기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처우개선, 청년 인력 유입을 통한 인력 기반 확충,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기술 전수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4)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안 제8조 및 제9조)

-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상담·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공동사업 및 집적지구 지원 강화(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공동시설·장비 구축, 공동 판로 개척, 공동 브랜드 육성 등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집적지구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집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안은 봉제산업의 위기 상황을 정책적 출발점으로 하여, 의류 봉제·인쇄 등 노동집약적 도시제조업 전반을 도시형소공인 범주로 포괄함으로써, 기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도시형 소공인의 산업적 특성과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영안정, 숙련기술 전수, 작업환경 개선, 공동사업 및 집적지구 활성화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는 기존 유사·중복 사업과의 역할 조정, 재정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지원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 마련 등 집행부의 세부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 · 한도 및 절차) ① 생략
②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 · 시설 · 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 · 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장비의 보수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 조사 등
을 통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④ 이하 생략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 ·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

2.~5. 이하 생략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책)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 · 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지 · 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⑤ 이하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생략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